

의안번호	2215689
의 퇴 인	박상혁 의원
회 답 일	2026.02.02.
추계번호	25C7392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제1항)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감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재량규정
3	안 제6조 (교육특구의 지정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10조 (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이하 “교육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교육특구 협약 및 교육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교육특구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제1항)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교육특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2조 (교육특구 전담기관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실행, 지역별 사업 운영 상황의 점검·조정, 전국단위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특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3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교육특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교육특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	의무규정
8	안 제14조 (교육특구별 전담조직)	(제1항)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6조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7조 (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학교(초등 방과 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 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무규정
11	안 제18조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제2항 및 제29조를 제외하고 같다)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8조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19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교육감은 교육특구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2항)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20조 (교육과정의 특례)	(제1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제2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21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입학 등을 지원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1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2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15	안 제22조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교원(이하 “지역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지역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원의 자격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항)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3조 (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제2항)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24조 (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18	안 제25조 (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제4항) 교육특구의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19	안 제26조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0	안 제27조 (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 자질을 평가받은 자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	재량규정
21	안 제28조 (교원 추가배치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22	안 제29조 (지역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제2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가 산학협력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23	안 제3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교육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교육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3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교육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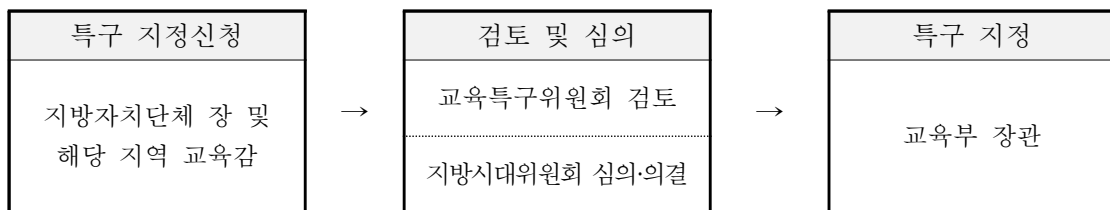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안 제6조 (교육특구의 지정 등) 안 제10조 (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안 제12조 (교육특구 전담기관 등) 안 제13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4조 (교육특구별 전담조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3	안 제16조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안 제17조 (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안 제18조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안 제19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안 제20조 (교육과정의 특례) 안 제21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안 제22조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안 제23조 (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안 제24조 (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안 제25조 (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안 제26조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안 제27조 (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안 제28조 (교원 추가배치에 관한 특례) 안 제29조 (지역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안 제3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특구(이하 “특구”)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은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되는 경우 학교 설립·운영, 교원 자격,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운영 절차



- 교육부는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¹⁾,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교육발전특구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제정안과 유사한 특례가 적용됨

[표 2] 교육발전특구 특례 주요 내용

유아·돌봄 ○ 특구 내 협약기관 유치원 설립·운영 허용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확대 ○ 학교 밖 돌봄 안전공제 보상 근거 마련	초·중등 ○ 다문화·외국어, IB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학구역 미지정 ○ 소규모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학년제 편성 자율화 ○ 초·중·고 및 특수학교 병설 허용	교원 ○ 지역교원제 신설 ○ 교원자격에 대한 특례 허용 ○ 협약기관 공동수업 가능 확대 ○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 완화 및 기업임직원 기간제 교원 임용 ○ 산학겸임교사 기본연구비 상향 ○ 직업계고 대상 공사립 교사 파견 특례 ○ 전공 교과 실무 경험자 전문교원 확보 ○ 특구 내 학교 교원 추가 배치
유학생 ○ 무상교육기관의 사증발급인 증서 발급 ○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 완화 ○ 유학생 대상 유상교육 적용	대학 ○ 지역산학 캠퍼스 조성 특례 ○ 산학협력교육 이동수업 요건 완화 ○ 교지 밖 다문화 교육 대학 부속시설 설치	

자료: 교육부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추진계획」, 2023.12.6.

- 2차에 걸친 시범지역 신청을 통해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와 8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되었으며, '24년 1,892억원, '25년 3,008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됨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이 발의된 상태임²⁾
 - * [참고자료 1]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 *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제정안이 시행되어 교육특구위원회가 신설되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등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안 제3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안 제5조 내지 제14조) 제정안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특구위원회, 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조직 구성의 구체사항이 대통령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담당 기구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지역협력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임
- (안 제16조 내지 제30조) 제정안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정될 지구의 수, 규제특례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교육부가 동일 취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만을 산출하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의안번호 제2205895호(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6874호(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제2213064호(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지정 단위 ¹⁾	1차 지정('24.2.)	2차 지정('24.7.)
기초지자체 (42)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 춘천, 화천, 원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 광양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광역시자체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광역시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41)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주: 1) 교육부는 ①기초지자체장·교육감의 공동신청, ②광역시자체장·교육감의 공동신청, ③광역시자체가
특정 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부산	30,465	33,000	63,465
대구	21,444	20,200	41,644
인천	3,300	3,000	6,300
광주	11,000	11,000	22,000
대전	10,070	10,000	20,070
울산	3,028	5,271	8,299
세종	126	3,000	3,126
경기	7,451	21,125	28,576
강원	18,451	29,137	47,588
충북	4,213	13,785	17,998
충남	9,100	11,860	20,960
전북	15,560	34,810	50,370
전남	4,877	24,144	29,021
경북	29,652	38,158	67,810
경남	13,866	35,713	49,579
제주	6,600	6,600	13,200
합계	189,203	300,802	490,005

자료: 교육부